

이상용 선생님 「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」

8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(2026-01-12)

※ 추후 발견되는 오탈자, 오답, 수정(사항) 등도 신속히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.

p.55 내용 수정 및 추가

<기존>

 기출지문

10. 선거일 현재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선거권은 정지되나 선거권은 정지되지 않는다.(×) [국가9급 2025](#) ⇒ ★ **피선거권이 정지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**(공선법 §18①, §19).

<수정>

 기출지문

10. 선거일 현재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선거권은 정지되나 선거권은 정지되지 않는다.(×) [국가9급 2025](#) ⇒ ★ **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도 선거권(공선법 §18①. 4호) 및 피선거권(공선법 §19. 3호)이 정지된다**.

★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(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)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. 1. 공무원이 될 자격 2.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.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

p.170 내용 이동 및 수정 – 170면의 ‘기출지문 8’을 244면으로 이동(‘기출지문 3’)하고 수정

<기존>

 기출지문

8.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다.(×) [국가7급 2022](#) ⇒ ★ ~할 수 있다(공선법 §59. 3호).

<수정>

 기출지문

1.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비용은 추천정당이 부담한다.(×) [국가9급 2017](#) ⇒ 공선법 §82의7③

2.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, 2 이상의 정당은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.(×) [국가9급 2025](#) ⇒ ★ 두 곳이 틀렸다. 공선법 §82의7①, ③

3.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다.(×) [국가7급 2022](#) ⇒ ★ ~할 수 있다(공선법 §82의7①).

p.250 내용 수정

<기존>

제86조 (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

① 공무원(국회의원과 그 보좌관·선임비서관·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),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,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「임·직원」, 통·리·반의장,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·새마을운동협의회·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)의 상근 임·직원 및 이들 단체 등(시·도조직 및 구·시·군조직을 포함한다)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20.3.25., 2022.4.20., 2025.1.7.> ★

<수정>

제86조 (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

① 공무원(국회의원과 그 보좌관·선임비서관·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),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,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「임원」, 통·리·반의장,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·새마을운동협의회·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)의 상근 임·직원 및 이들 단체 등(시·도조직 및 구·시·군조직을 포함한다)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20.3.25., 2022.4.20., 2025.1.7.> ★

p.417 내용 수정 및 추가

<기존>

 기출자문

5. 「공직선거법」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.(×) [〈국가7급 2025〉](#) ⇒ **「선후구」선행관리위원회~** (공선법 §193①).

<수정>

 기출자문

6. 「공직선거법」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.(×) [〈국가7급 2025〉](#) ⇒ **「국회」는~** (공선법 §193①). ★